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647 호
- 다. 제출일자 : 2024. 2. 5.
- 라. 회부일자 : 2023. 2. 7.

2. 제안이유

- 가. 사당역 일대는 과천대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사당천 상류 유역으로부터 빗물 유출수 집중으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임.
 - '22.8월 서울지역 이상폭우(최대 141.5mm/h) 발생으로 사당역 일대를 포함한 서초, 동작 지역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
- 나. 사당·이수 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당천 단면확장',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당IC 저류조 증설' 등 대책을 추진 중이나,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사당천 상류(수방사 내)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추진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가. 사당천 상류에서 사당역쪽으로 유출되는 우수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수방사 내 빗물 저류조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호협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코자 하며,
- 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사당역 일대가 저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¹⁾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서울시(이하 “시”)와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수방사”)간 우수유출저감사업을 추진코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 협약사항 중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²⁾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조례”)제3조 및 제4조([표 1] 참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

[표 1]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현황

- 2010년 9월(82.5mm/hr), 2011년 7월(110mm/hr) 국지성 호우로 주택 침수피해 발생
- 2022년 8월(141.5mm/hr) 일최대 381.5mm 이상폭우로 사당·이수 지역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
 - 서초구 : 주택 및 상가 2,651호, 공공시설 494개소 피해
 - 동작구 : 주택 및 상가 5,834호, 공공시설 33개소 피해

2)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제4조(역할 및 책임)

1. 서울시는 제 3조에서 정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생략)

■ 시-수방사 업무협약(MOU) 추진 경과 및 계획

- 시는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수방사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23.6월 수도방위사령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 같은 해 9월 시 치수안전과가 수방사 군수처와의 면담에서 우수유출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우수유출저감사업'³⁾을 수방사 내 부지와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에, 수방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우수유출저감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표 2] 참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국방부 역시 공문⁴⁾을 통해 '재해예방 시설물을 수방사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재해예방 측면에서 동의'함.

[표 2] 수방사 내 '우수유출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면담 내역 ('23.9.15.)

□ 시 요청사항

- 수방사 건축물 옥상에 10cm 빗물저장 협조
- 수방사 운동장(100m×150m)에 10cm 빗물저장 협조
- 수방사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100m×150m×4m) 설치 협조
- 수방사 관악산 계곡 하류부에 사방댐(70m×30m×1~6m)설치 협조

□ 수방사 의견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우수유출저감(10cm 빗물담기)사업 취지를 공감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 건물옥상, 운동장 상부 : 10cm 빗물담기 적극 협조 예정
 - 운동장 하부 저류조 설치 : 비 우기철에는 대피소 및 기타 군부대 시설로 활용 가능하고, 추후 저류조 상부에 건축물 설치를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협

3)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12461 (2023.7.6.)

조 가능

- 관악산 계곡 사방댐 : 수문 운용 자동화시설 설치 제공시 협조 가능
- 논의된 우수유출저감(10cm 빗물담기) 사업은 서울시와 수방사간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 희망

○ 이에 따라, 시는 '23.11월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국방부 및 수방사와의 실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4.1월 업무협약서(안)(이하 “협약서안”)의 법률 검토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금회 수방사 부지 내 사업을 추진코자 조례 제3조 및 제4조⁵⁾에 따라 서울시 재정의 의무부담에 대한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임.

○ 시는 협약서안의 효력 발생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

4) 「서울시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 시행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 회신」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3353(2023.11.21.)

국 방 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치수안전과장)

제목 서울시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 시행 협조요청에 따른 의견 회신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치수안전과-12661('23.7.10.)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시행 협조
나. 서울시 치수안전과-19253('23.11.6.)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 시행 협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서울시의 수방대비 빗물유출 저감대책 시행 협조 요청에 대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국방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빗물유출 저감을 위해 ‘재해예방 시설물을 수방사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재해 예방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이하 생략)

5)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동의를 선결되어야 하나, 의회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무인 경우, 조례 제3조 단서⁶⁾에 따라 의장과 상임 위원장에 대한 사전 보고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시는 지난 비회기 중 상임위원장(1.23일) 및 시의회 의장(1.30일)에게 사전 보고를 득하고, 현재 협약체결(협약의 효력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의회 의결 전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금회 시의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됨.
- 이에 시는 협약체결 후 효력 발생과 함께 '24.4월부터 9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비 추계 관련

- 시는 수방사 부지(관악구 남현동 663번지 일대) 내에 총 사업비 630억원을 투입하여 '27.12월까지 약 6.5만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수방사 건축물 옥상에 월류형 배수 홈통 등을 설치하여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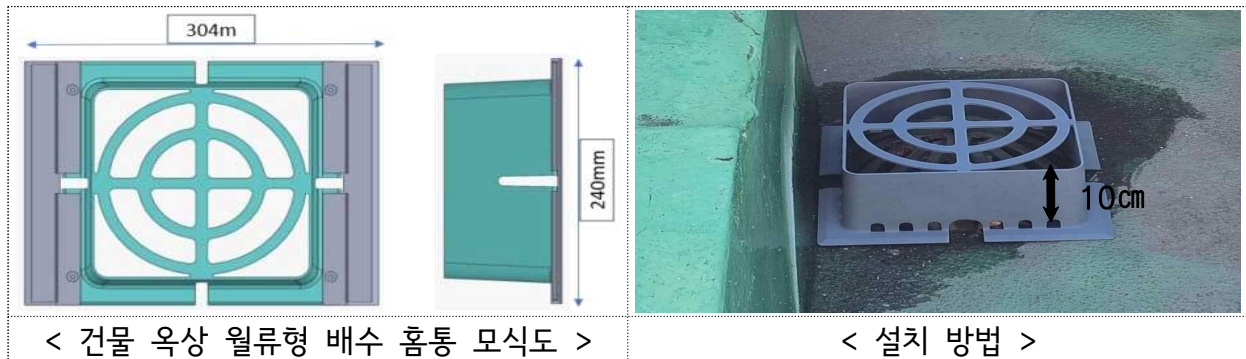
6)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670톤의 우수를 임시 저장하고 둘째, 우수 시 운동장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삽입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약 1,500톤의 우수를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당천 상류 계곡에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우수 시 증가된 계곡 유량 약 2,400톤을 저장하고 넷째, 운동장 하부에 약 60,000톤의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건설하려는 것임([표 3] 참조).

[표 3] 수방사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물별 설치 계획

■ 건축물(7동) 옥상 월류형 배수 홈통 설치 (670m³)

- 운영 방법 : 옥상 배수 홈통에 배수 단면을 축소한 10cm 월류형 홈통을 제작·설치하여 우수 유출 지연 및 저류
- 예시



■ 운동장 상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1,500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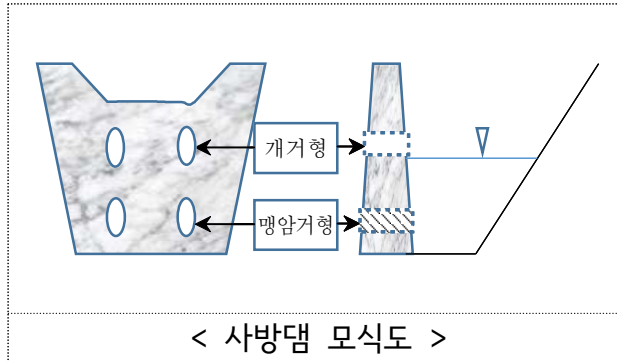
- 운영 방법 : 수방사 운동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10cm이상 빗물을 임시저류
- 예시



■ 사당천 시점부 계곡 저류 (2,400m³)

- 운영 방법 : 사당천 계곡 시점부에 사방댐 등을 설치하거나, 산자락에 시설(기슭막이, 큰 돌골막이, 친수공간 조성) 등을 설치하여 우수 유출 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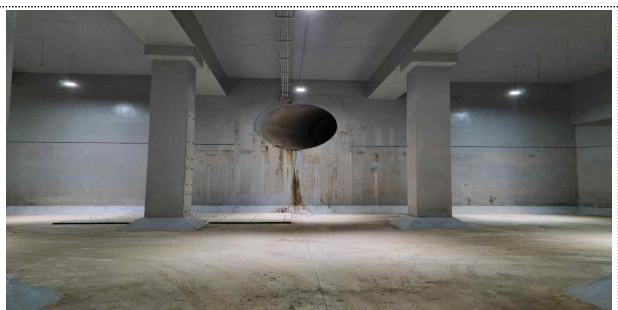
- 예시



■ 운동장 하부 저류조 신설 (60,000m³)

- 운영 방법 : 수방사 운동장 하부 총 6만톤의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시설 구축

- 예시



○ 여기서, 총사업비 630억원의 추계는 동 사업과 유사 사업이었던 ‘서울대 정문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⁷⁾(저류용량 4만

7) 「서울대 정문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205번지 일대
- 면 적 : 6,320m²
- 저류량 : 40,000m³
- 사업기간 : 2011.10 ~ 2017. 5
- 소요예산(안) : 1,500백만원(시설비 750, 감리비 750)

톤)을 준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43백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원, 공사비 613억 57백만원 등에 따른 것임([표 4]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⁸⁾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⁹⁾하여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등¹⁰⁾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약6개월 소요 예상)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실제 공사 착공까지는 상당한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본 사업의 가장 핵심인 6만톤 규모의 지하

8)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생략)

9)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50호, 2022. 7. 11., 일부개정)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함
2. ~ 3. (생략)

10) 행정안전부 고시 500억원 이상 지방투자관련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 L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 LOMAC: 지방투자분석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설)

저류조 준공 시기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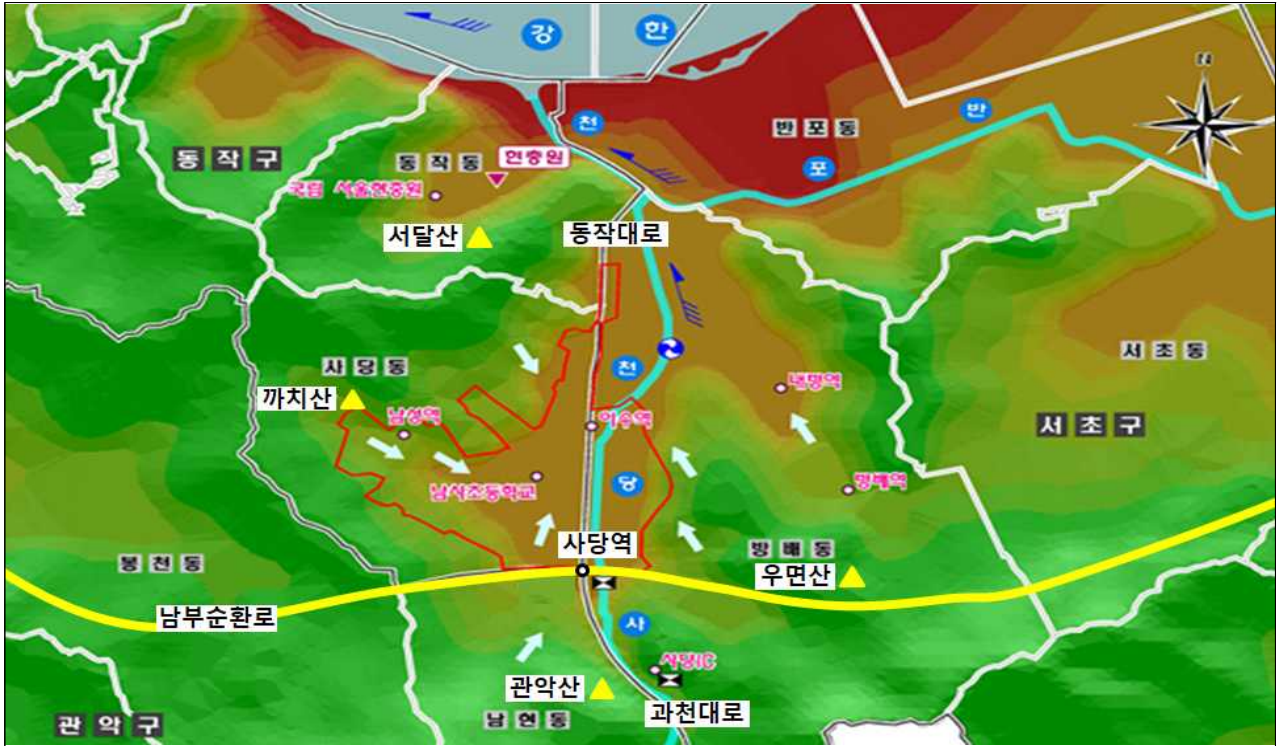
[표 4] 수방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추계 내역(시 치수안전과 '24.2.16일)

1. 비용발생 요인 : 수도방위사령부 내 빗물저류조 설치 등 우수유출저감 사업추진에 따른 방재시설 건설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대 정문앞 빗물저류조(4만톤) 공사비 기준 저류량 1톤당 시공비 약100만원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세출	타당성조사 용역	143,000	-	-	-	143,000
	기본 및 실시설계	-	1,500,000	-	-	1,500,000
	공 사 비	-	5,000,000	28,000,000	28,357,000	61,357,000
총비용		143,000	6,500,000	28,000,000	28,357,000	63,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 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43,000	6,500,000	28,000,000	28,357,000	63,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43,000	6,500,000	28,000,000	28,357,000	63,000,000
5. 덧붙이는 의견						
- 본 비용추계는 서울대 정문앞 빗물저류조 4만톤 공사비를 기준으로 개략 추산한 것으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은 추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결정 예정						

■ 사업추진의 타당성 측면

- 사당역 일대는 지형적으로 남쪽의 관악산·우면산과 서쪽의 서달산·까치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로 '관악~방배' 구간의 남부순환로와 남북으로 '과천~이수' 구간 과천대로·동작대로가 교차하

는 저지대로 강우 시 노면수가 사당역 일대로 모여드는 대표적인 침수취약지역임([그림] 참조).



[그림] 사당역 일대 지형 특성

- 해당 지역의 배수 체계는 관악산과 우면산으로부터 많은 양의 우수가 사당천(BOX암거)으로 유입되어 반포천과 합류 후 한강으로 배수되고, 추가적으로 남현·방배·사당 지역의 우수도 사당천으로 합류되는데,
- '22.8월과 같은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극한강우¹¹⁾가 발생하는 경우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과 하구수위(한강·반포천)의 상승 영향 등으로 사당천 하수암거가 역류하여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시는 사당역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해 2단계 대심도 빗물배

11) 2022년 8월(141.5mm/hr) 일최대 381.5mm

수터널 사업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¹²⁾을 통해 당초 59.4만톤¹³⁾의 저류량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빗물 저류용량이 최종 42.2만톤으로 결정¹⁴⁾됨에 따라 부족분 17.2만톤은 ‘사당IC 저류조 증설 사업’¹⁵⁾으로 1.2만톤을 우선 확보하고, 금회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을 통해 6.5만톤을 확보하는 등 부족분을 계속 채워나갈겠다는 의지임.

12)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빗물배수터널 신설」 치수안전과-7924(‘22.12.12.), 사업기간 ’17~’30년

13)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2019.7.)

제4장 홍수량 산정

4.1 홍수량 산정 방법 채택

(1) 홍수량 산정방법은 강우-유출 관계를 이용한 합성단위도 방법 중 Clark단위도법을 채택한다.

(2) 도시화율이 높아 유출특성이 상이한 도시하천은 홍수량 산정 시 도시유출 모형을 고려하여 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 Clark 단위도법은 순간단위도 원리를 이용한 유역추적방법으로 유역의 도달시간과 유역의 저류능을 대표하는 저류상수 등 2개의 매개변수의 결정만으로 단위도를 합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성이 없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이다. 국내 실무에서는(2000년대 이후) 상기 4가지 방법을 비교 평가하여 대부분 Clark 단위도법을 최적치로 채택했다.

→ 유역면적 2.09km², 유로연장 2.68km, 도달시간 0.23hr, 시 방재성능목표 100mm/h 단일 강우 조건 **홍수량 산정결과 : 사당역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저류량 총 59.4만톤 필요**

14) 「이수~과천 복합터널 빗물배수터널」 제3자 제안 내역 및 협상 현황

구 분	제3자 제안	협 상
방 재 성능목표	30년 빈도, 95mm/hr	(1단계-민자) 30년 빈도, 95mm/hr (2단계-재정) 50년 빈도, 100mm/hr
총사업비	4,782억원(‘16.2. 기준 불변가) (재정지원금(배수터널) : 1,061억원)	5,807억원(‘16.2. 기준 불변가) (재정지원금(배수터널) : 1,693억원)
사업기간	2017 ~ 2030 (공사기간 66개월, 운영기간 30년)	
규 모	31.7만톤	42.2만톤

15) 「사당IC 저류조 증설 사업」 서초구 물관리과-19187(‘23.6.29.), 사업기간 ’23~’24년

- 이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하겠으며 또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국방부(수방사)와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 관내에서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등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비해 본 동의안의 경우, 수방사 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됨.
- 한편, 현재 시가 추진 중인 1단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들의 저류량에 따른 총사업비 즉, 1만 톤당 단위 사업비([표 5] 참조)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해 보임.

[표 5] 침수방지사업 간 단위사업비 비교 ('24. 2월 기준)

사업명	저류량 (A)	총사업비 (B)	저류량 1만톤당 단위사업비 (B/A)
수방사 내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6.5만톤	630억원	96.9억원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50만톤	5,640억원	112.8억원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37만톤	5,010억원	135.4억원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12만톤	3,504억원	292억원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사당역 일대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2030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이들 사업의 공백을 해소 및 보완코자 본 협약체결을 통하여 국유지(수방사) 내 우수유출저감사업(’27.12월 준공 예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본 동의안의 ‘수방사 빗물유출저감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63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중앙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약6개월 소요 예상)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요구되는바,
 - 준공 시기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간 시기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예측을 통한 사전 대피시스템 마련 등 보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붙임]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극한강우 대비 사당역 일대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우수유출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기상이변 대비 사당역 일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대방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수도방위사령부 건축물 옥상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상부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3. 수도방위사령부 계곡부 저류 및 하류부 수문 설치에 관한 사항
4. 수도방위사령부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수유출저감 및 수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역할 및 책임)

1. 서울시는 제 3조에서 정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수도방위사령부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공동협력) 양 기관은 제3조 제4호에 따른 지하 저류조 설치에 관하여는 국방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본 협약의 효율적 추진 및 시설 유지·관리·운영 등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하며, 제7조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한다.

제7조(협약의 해석,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양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 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호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2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